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의5] <신설 2023. 12. 29.>
 [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제25조의3제2항 및 제25조의8 관련)

1. 자격취득교육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가. 통합환경관리 개론 나. 통합환경관리 법령 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론 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실무 마. 연간 보고서 작성 방법 바. 사업장 공정의 이해 사.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0시간

2. 보수교육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가. 통합환경관리 정책 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사례 다. 통합허가 배출기준 설정 방법 라. 통합공정도 및 물질수지표 작성 방법 마.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4시간

비고

1. 교육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의 방식으로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은 전체 교육시간의 5분의 2 범위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나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체 교육시간의 5분의 2를 초과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